



문서번호	일자리정책과-502
결재일자	2015. 1. 1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19호

★주무관	일자리지원팀장	일자리정책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
안주혜	이광현	라병오	김종순	01/15 이비오
협 조	공보담당관	어용경		
	자치행정과장	권창석		
	전산정보과장	조덕현		

# 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계획

2015. 1



성 동 구  
(일자리정책과)



# 2015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계획

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 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생산적·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위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.

## I 사업근거

-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
- 2015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(행정자치부)

## II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15. 3월 ~10월 (8개월)  
(상반기: 2015. 3월 ~ 6월, 하반기: 2015. 7월 ~ 10월)
  - ※ 사정에 따라 하반기 사업은 취약계층 생계대책 강화차원에서 12월까지 연장 추진 가능
- 사업비: 194,800천 원 (국비 97,400천 원, 시비 48,700천 원, 구비 48,700천 원)
  - 인건비: 189,080천 원
  - 일반운영비 등: 5,720천 원
- 참여인원: 총 56명 내외(반기별 28명 참여 예정)
  - ※ 반일근무자(65세 이상) 참여에 따라 상·하반기 선발인원 변경가능
- 사업추진: 상·하반기 구분 실시

구 분	신청(접수)기간	사업(시행)기간
2015년 상반기	'15.1.19.(월)~1.26.(월) (8일간)	'15.3.2.(월)~6.30.(화) (4개월)
2015년 하반기	'15.5.19.(화)~5.26.(화) (8일간)	'15.7.1.(수)~10.31.(토) (4개월)

## ■ 대상사업: 행정자치부 지정 5대유형 10개 사업

- ☆ [ 1유형 ] 지역특화자원 개발형(2개사업)
  - ① 지역 특산물 상품화사업 ② 지역전통기술 습득 및 활용제품 제조사업
- ☆ [ 2유형 ]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형(2개사업)
  - ③ 기업연계 등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④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
- ☆ [ 3유형 ] 국가 및 지자체 시책사업(1개사업)
  - ⑤ 자치단체 자율일자리 및 기타 국가시책사업
- ☆ [ 4유형 ] 지역생활 공간 개선형(3개사업)
  - ⑥ 마을가꾸기 사업 ⑦ 지역유희공간 및 시설 활용사업 ⑧ 자원재생사업
- ☆ [ 5유형 ] 서민생활 지원형(2개사업)
  - ⑨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

## ■ '14년도 추진실적: 총 62명 선발, 153백만 원 집행

- 사업기간: '14. 3. 3. ~ 12. 12.(약 10개월- 상반기 4개월, 하반기 약 6개월)
- 사업비: 159백만 원(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)
- 사업분야: 취약계층집수리사업 등 6개 사업에 취약계층 참여

## Ⅲ 2015년 주요변경사항

### ■ 대상사업 변경

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생산적 사업 위주로 개편

구분	2014년	2015년
대상사업	3대유형 16대사업	5대유형 10대사업
세부사업	<1유형>지역특화 자원 활용형 → 4개사업 <2유형>지역인프라 개선형 → 6개사업 <3유형>취업지원 및 생활안정형 → 3개사업	<1유형>지역특화 자원 개발형 → 2개사업 <2유형>기업연계 및 취업지원형 → 2개사업 <3유형>국가 및 지자체시책사업 → 1개사업 <4유형>지역생활공간 개선형 → 3개사업 <5유형>서민생활 지원형 → 2개사업

## ■ 임금 및 근무시간

- 변경사유: 2015년 「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」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변동 및 '15년 예산 변동에 따른 임금조정

### ▶ 임금변경

구분	2014년	2015년
시급(최저임금)	5,210원	5,580원
일급(최저임금)	5시간 / 26,050원	5시간 / 27,900원
부대경비	3,000원	3,000원

※ 월 임금: 만 65세미만 → 약 73만 원, 만 65세이상 → 약 46만 원

### ▶ 근무시간 동일

구분	2014년	2015년
근로시간	주 26시간 이내 (만65세이상: 주 15시간이내)	주 26시간 이내 (만65세이상: 주 15시간이내)
1일 근로시간	1일 5시간(월~금) (만 65세이상: 1일 3시간)	1일 5시간(월~금) (만 65세이상: 1일 3시간)

## ■ 참여제한 재산상한 규정 변경

- 최저생계비(120%이하 → 150%이하), 재산액(1.35억 → 2억) 상향조정

## ■ 기타 주요 변경사항

- 가족계좌 도입 운영으로 임금지급 개선
  - ※ 신용불량자 등 계좌개설 제한자에 대하여 가족계좌 도입 운영
- 공무원가족 사업참여 제한 폐지 →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제한은 유지
- 건강보험료 부과요율 변경(2.995% → 3.035%)

## IV

## 추진계획

### ■ 추진사업 대상(5대유형 10개사업 중 6개 세부사업)

- ※ 부서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수요조사 후 서울시를 거쳐 행정자치부 사업 승인

유형	사업명	총인원	세부사업명	사업부서
계		28명	6개 세부사업	5개 부서
< 2유형 > 기업연계 및 취업 지원형	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	3명	① 일자리 발굴단 운영	일자리정책과
< 4유형 > 지역생활 공간 개선형	마을 가꾸기 사업	10명	②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길 가꾸기	공원녹지과
		2명	③ 친환경 텃밭 관리	지역경제과
	자원 재생사업	4명	④ 폐자원 재 활용	청소행정과
< 5유형 > 서민생활 지원형	다문화가정 지원사업	5명	⑤ 찾아가는 다문화체험교실	보육가족과
		4명	⑥ 우리동네 친정언니	

## ■ 대상사업 선정

- 단기적인 사업을 제외한 생산적·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
  - ※ 기존 3대 16개사업 → 5대 10개 사업으로 재편
-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지속적인 사업 발굴

## ■ 참여대상

-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(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)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%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
  - ※ 노숙자는 우선선발(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)
  - ※ 만 65세 이상자 『노인일자리사업』 안내, 그래도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

## 《 2015년 최저생계비 150% 범위 》

(단위 : 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금액(월)	617,281	1,051,048	1,359,688	1,668,329	1,976,970	2,285,610
150% 범위	925,921	1,576,572	2,039,532	2,502,493	2,965,455	3,428,415

### ■ 선발절차

-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
-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: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
 -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> 부양 가족수 > 장애인 가족 순
-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

### ■ 근무시간 및 임금

- 근무시간: 주 26시간 이내(1일 8시간 이내 원칙) 근로
  - 만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15시간 이내(1일 4시간 이내 원칙) 근로
  - ※ 사업장별 자율적 근무시간 운영 가능
- 임금: 시간당 5,580원(1일 5시간/ 27,900원, 1일 3시간/ 16,740원)
  - 부대경비 별도 지급: 1일 3,000원
  - ※ 1인 월 지급액 (만 65세 미만: 약 73만원, 만 65세 이상: 약 46만원)
- 유급 주휴일, 연차 유급휴가 적용
  - 근로계약서 상 주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
- 22:00 이후의 야간근무 금지

### ■ 사업참여자 관리

- 근로자 보건관리
  - 건강검진: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국민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

- 정보유출 및 사적이용 예방
  - 사전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
- 안전보건교육 실시
  - 교육대상: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
  - 교육일정: 상·하반기 사업기간 중 실시
  - 강 사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
  - 교육내용
    -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33조에서 정한 사항
    - 근무수칙, 안전교육, 성희롱예방교육 등
  - 기 타: 안전보건교육 참가자 근무시간 인정

## V 행정 사항

- 각종 언론매체 홍보 및 공고문 게재 협조 (공보담당관)
- 참여대상자 신청·접수 철저 (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)
  - 접수창구 표시·안내 및 공고문 게첨
  - 신청·접수분의 전산입력(엑셀양식 및 접수 신청서 익일 제출)
  - 직능단체 회의 및 반상회 시 주민 홍보
- 구청 홈페이지 게재 (전산정보과)
- 본 계획서에 열거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 2015년 『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』 종합지침 적용.

## VI 향 후 일 정

-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: '15. 3. ~ 6.
-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: '15. 3월 중
-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: '15. 7. ~ 10.
-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: '15. 7월 중



- 붙임 1. 지역공동체일자사업 신청서식 등 관련서식 각 1부.  
2.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.  
3. 2015년 지역공동체일자사업 사업계획서 각 1부. 끝.